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5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2조)
- 충청북도의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가 청구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이하 "제도개선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①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도개선 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청구인 인적사항
2. 제도개선 청구사항·청구취지·청구이유
3. 입증자료

제5조(요건심사 등) ①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 소관의 자치법규나 관련제도 해당 여부
2. 제도개선 청구사항이 부조리 또는 부패유발 요인의 해당 여부

③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제도개선 청구인명부

- 서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서명주민수: 명

청구인 대표자 (인)

(별지 제3호서식)

청 구 인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은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를 기재한다.
3. 주소란은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제20조(제도개선 권고)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